

행 정 자 치 부

주 의 요 구

제 목 부적합 지하수 사용금지 등 사후조치 부적정

기 관 명 기장군

내 용

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, 제44조제1항 [별표 17] 7. 식품접객업소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너. 의 규정에 따르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·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「먹는물관리법」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, 일부 항목 검사¹³³⁾는 1년(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), 모든 항목 검사¹³⁴⁾는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

또한 「식품위생법」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[별표 23]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여야 하며,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검사 판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영업주에 대하여 시설개수 명령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.

따라서 수질검사기관 등에서 관할 식품접객업소의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

133)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(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)

134)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

사실을 통보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부적합 지하수가 식품의 조리·세척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용금지(봉인·봉합) 및 시설개수명령 등의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그런데 부산광역시 기장군 ○○○○과 ○○○○팀은 아래 【표】와 같이 수질검사기관인 ○○○○○○○ 등으로부터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수질검사 부적합 2건을 통보 받고도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○○○○팀에는 즉시 공유하지 않아 지하수 사용금지(봉인·봉합), 시설개수명령 등의 조치가 각각 26일, 43일 지연되었다.

【표】 부적합 지하수 사후조치 미흡 명세

수질 검사 기관	대상 업체	대 표 자	소재지	검사 의뢰 일자	○○○○○팀 검사결과 교부	○○○○○팀 결과 전달	검사결과	행정조치
○○ ○○ ○○○	○○* (음식점)	○○ ○	○○읍 ○○리 00-0	2016. 7.28. (정기 검사)	2016.08.11	2016.09.22	부적합 (일반세균, 대장균군 등)	● 봉합봉인(9.23) ● 1차 재검사 (10.7, 부적합) ● 시설개수명령 (10.17) ● 2차 재검사 (10.14, 적합) ● 시설개수 완료 (10.18)
○○ ○○ ○○	○○○○ ○○○ (집단 급식소)	○○ ○	○○면 ○○리 000-00	2016. 10.20. (정기 검사)	2016.10.28	2016.11.22	부적합 (총대장균군)	● 봉합봉인(11.23) ● 시설개수명령 (12.13) ● 재검사 (11.23, 적합)

조치할 사항 기장군수는

【주의】 앞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(음용수)에 대하여 사용금지 및 시설개수명령 등의 사후관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내 업무공유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